

시 민

★대외협력과장	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	상수도사업본부장	행정2부시장	서울특별시시장
김인철	김준기	정연찬	문승국	02/28 박원순
협 조	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경영관리부장 총무과장			정효성 김상한 김갑수 정상훈 전영석 이성규

문서번호	대외협력과-1183
결재일자	2013.2.2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서울특별시시장 방침 제43호



수도사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계획

2013. 2

서울특별시
(상수도사업본부)

사건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민 참여 고려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전문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법령 규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■ (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등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기타 사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■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기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계 기관 : 유 ■ (행정안전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수도사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계획

수도사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전담기구를 설립하고자 함

I 추진 배경

- 해외시장 진출 통한 성장동력 확보 시급
- 현행체제에서는 규제요인이 많아 정상적인 해외사업 추진 곤란
- 민간기업의 수도사업 해외 진출 지원 및 공동진출

II 필요성

- 해외수도사업 적극 추진 곤란
 - 적용법규 등 규제요인 많아 사업추진시 어려움 발생
 - 사업시행 관련 법규외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기업법, 지방재정법 등 규제
 - 시의회 승인등 절차 및 제도 복잡
 - 투자사업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 예산 편성 곤란
- 수익창출 규모 확대
 - 참여범위를 현재 수도시설 운영 및 감리에서 시공 등으로 확대하여 수익창출 규모 확대 필요
-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부담 최소화
 - 특수법인 설립 등을 통하여 해외사업 추진시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
- 전문성 확보
 - 전문인력의 노령화로 퇴직예정자가 많고 기능직의 일반직화로 업무 공백 예상 ⇒ 전문기술 보유 우수 퇴직인력 활용 필요

III 설립형태 검토

□ 설립의 법적근거

- 지방공기업법 제49조 : 지방공사 설립
- 지방공기업법 제76조 : 지방공단 설립
-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: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등 설립
-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및 민법에 의한 재단설립

□ 설립형태 조건

- 업무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성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공조직의 지나친 관여를 받지 않는 형태가 바람직 ⇒ 경영의 독립성
-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립경영 필요
⇒ 수익성 추구
- 수도사업 전담기구는 수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성과지향성이 강한 조직형태로 설계 ⇒ 성과지향성
- 민간을 참여하여 조직의 유연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⇒ 민간참여

<전담기구 형태별 비교>

구 분	정부주도		민관합작투자(제3섹터)
	공단	공사	주식회사
지방정부의 출자비율	100%	50% 이상	50% 미만
경영의 독립성	낮음	←————→ 높음	
수익성 추구	낮음	←————→ 높음	
성과지향성	낮음	←————→ 높음	
민간참여성	낮음	←————→ 높음	
공공성 추구	높음	←————→ 낮음	

□ 검토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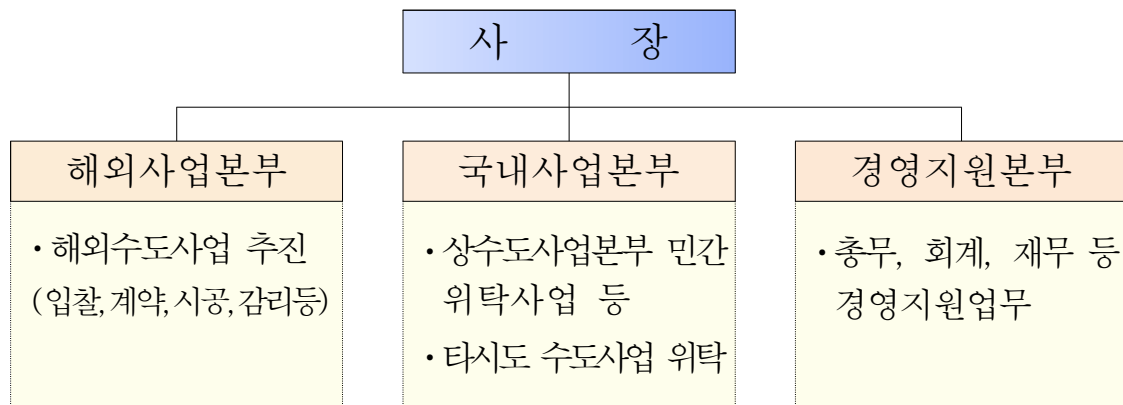
- 전담기구의 조직형태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, 사기업의 성과지향성을 추구하며 민간의 자금과 운영기술을 활용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결정

IV 세부추진계획

□ 전담기구 조직 및 업무(안)

⇒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조직 구조, 인력 및 기능과 상수도 사업본부와의 업무한계를 확정

- 조직 및 업무(안)



□ 타당성 용역 시행

- 타당성 용역 시행 근거 :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7조의2
- 과업지시 주요내용
 - 전담기구 역할, 기능, 조직설계 검토 및 인력 수요
 - 전담기구의 사업범위,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별 수치분석
 - 자본금, 지분, 주주모집, 채용조달 및 투자유치 방안
 - 국내·외 사례연구,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

- 용역기간 : '13. 4월 ~ 7월
- 예산액 : 49,601천원(조직담당관 포괄예산 사용)
 - 세부내역 : '붙임' 참조

주민설명회 개최

- 개최시기 : '13. 8월
- 참석대상 및 내용 : 유관기관·단체, 지역주민 등에게 설립내용 설명

추진일정

- 타당성 용역 심의 2013. 2월 ~ 3월
- 타당성 용역 발주, 공고, 입찰, 계약 2013. 3월 ~ 4월
 - 서류검토(7일), 입찰공고(7일), 적격심사(14일), 계약(10일)
 - ※ 전담기구 형태 관련 '아리수 국제화 포럼' 소위원회 연구 발표 : 2013. 4월
- 타당성 용역 시행 2013. 4월 ~ 7월
 - ※ 용역결과에 따라 수도사업 해외진출 업무를 위한 최적의 전담조직 설립 및 업무범위 확정
-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설립심의위원회 구성·심의 2013. 8월
- 입법예고문 공고 및 법제심사 의뢰 2013. 9월
 - 공고번호 부여 및 시보게재(3일), 규제심사(5일), 법제심사(7일), 입법예고(20일 이상)
- 상임위 심의 안건상정, 본회의결 및 조례공포 2013.10월~ 12월
- 민간투자공모, 임직원채용 등 전담기구 출범 2014. 상반기

소요예산

-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자본금 등을 2014년도 예산편성시 반영

V 기 대 효 과

- 해외 수도사업 수익확대 및 리스크 최소화
 - 해외에서 적극적인 수주활동 및 시설투자 가능
 - 해외사업 추진시 해당사업을 추진할 특수법인 설립이 가능하여 리스크 발생시 부담 최소화
- 국내 지방상수도 사업 참여 가능
 - 상수도사업 운영·관리, 우수유통향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지방상수도 수탁사업에 참여 가능
- 수익금 재투자
 - 서울시 지분은 전액 서울시 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시설개선 및 요금인상 요인 해소
 - 민간기업의 수익금중 일부는 수도발전기금(가칭)으로 적립하여 해외수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
- 상수도 전문성 강화
 - 외부로부터 상수도 고급 전문인력 영입 가능
 - 상수도 전문기술 보유 퇴직인력 활용 가능

VI 행 정 사 항

- 학술용역 사전절차 이행
 -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사 : 수시심의
- 부서별 협조사항
 - 조직담당관 : 학술용역심의 및 타당성 용역 예산 협조
 - 재정담당관 : 전담기구(지방공기업) 설립관련 협조
 - 총무과(본부) : 전담기구 설립시 정원조정 및 직제 관련 협조

붙임 :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1부. 끝.